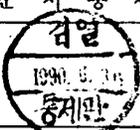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개 30320-1559	(전화: 731-6351)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0. 6					
보조 기 관	부시장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관리계장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환지계장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 신 명 의	시 장			
제 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제 1 안	내부결재					
제 목	: 같은건					
 						
<p>1. 우리시에서 '90.6 사업시행안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정리</p> <p>사업지구중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반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내 일부 공공시설(도로, 공원)의</p> <p>미실치와 아파트지구 잔여지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p> <p>이 지연되어 부득이 '90.12.31까지 환지확정 처분의 연기가 불가함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p> <p>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및 제14 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4조(권한</p> <p>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코자 합니다.</p>						
가.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내역			151			

원본
 대
 6.30


지구명	시 행 면 적	시 행 자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영동지구	26,764,872.9m2 중 5,421,066.6m2	서울특별시	68.1.18- 90.6.30	68.1.18- 90.12.31	6개월 연장
나. 공 고 개 요					
1) 공고종별 : 입간지 2가사 및 관(시)보 게재					
2) 소요예산 : 2,710,400원 (35,000원x4단x8.8mmx2사x1.1)					
3) 지출과목 : 계속지구, 영동토지, 사무관리, 수용비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지불					
제 2 안					
공 고 (안)			32	190627	125
서울특별시 공고 제3399 호			1990.6.27	125	223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공고					
1. 건설부 공고 제6호('68.1.18)및 제8호 ('68.1.23), 제77호('71.8.					
24)로 사업시행인가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구중 환지확정 처분미 완료된 반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를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1990. 6 .					

서울특별시

○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내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영동지구	26,764,872.9m ² 중 5,421,066.6m ²	서울특별시	'68.1.18-	'68.1.18-	6개월 연장
			'90.6.30	'90.12.31	

끝.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갑은건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

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하시기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있기 바람.

첨부 : 공고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종합건설본부장(토목부장), 주택기획과, 도시계획과, 강남구, 서초구(도시정비과),

관재과장.

제 4 안

수신 : 공보관

발신 : 도시개발과장

제목 : 공고계재의뢰

1.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중 반포; 압구정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에 되었기 2개일간신문

및 시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안 낙항(1-4) 이기시행
첨부 : 공고문(사본) 3부. 끝.
제 5 안
수신 : 총무처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보게제의뢰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사본
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인가 하였고 관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2부. 끝.
제 6 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개발과장
제목 : 사업계획(기간연기)인가 보고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하였고 보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사본 1부. 끝.

6-3
